

산재보험 재심사 재결사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주) 노동조합지부장이 노동조합사무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사업장 구내식당 앞으로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피재되어 요양을 신청한 경우

(93-694호 93. 7. 26.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한 ○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 처 분 청 :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 재 근 로 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주식회사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한○○”(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3. 1. 26.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주) 노동조합지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 12.30. 노동조합사무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사업장 구내식당 앞으로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고 상병명 “1) 우경골 원위 1/4나선형 골절, 2) 우비골 경부 골절상”으로 산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업무상 의사에 따른 구체적인 개별적 지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상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결정에 불복하면서 피재당일 음성 PET 공장의 노사협의회를 하는 날이었으며, 노동조합도 당시 회사가 추진중인 5행운동 및 TPM운동에 동참을 요구받고 일정부분 참여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11조 1항의 노사협의회는 이를 근무로 인정하였으며, 노동조합은 5행운동 및 TPM에 대하여 사용주의 지배관리하에 지휘감독을 받으며 지부장의 책상 서랍속까지 대표이사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회사의 구체적 개별지휘를 받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처분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3. 6.14. 한○○)
2. 답변서(1993. 6. 16. 원처분청)
3.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3. 4. 13)
4. 요양신청서 사본(1993. 1 한○○)
5. 재해조사 복명서 사본(1993. 1.26. 고○○)
6. 문답서 사본(1993. 1. 16. 신○○)
7. 단체협약 사본(○○(주))
8.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주) 군포공장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12.30. 08:30경 노동조합 사무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려고 구내식당 앞으로 가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고 상병명 “1) 우경골 원위 1/4나선형 골절, 2) 우비골

경부 골절상”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는바 동 사업장 단체협약 제13조의 조합전임요원 규정상 “1) 사업장은 조합원중 6명(본조위원장의 1명 각지부별 1명)이 조합업무에 전임할 것 등을 동의한다. 2) 전임자의 전임기간중 임금은 사업장이 부담하며 별도로 정한다. 3) 사업장은 전임자에 대하여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직시킨다”등의 규정과 1993. 1. 16.자 동료근로자 신○○의 진술서상 “청구인은 1979. 6. 12.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990. 9. 21.부터 동사 군포공장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08:30경에 출근하여 17:30경 퇴근시까지 생산활동 업무는 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였으며, 피재당일의 업무내용은 노동조합지부장의 평상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단체활동중 다른 활동은 하지 아니하였다”의 진술로 보아 청구인은 1990. 9. 21.부터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단체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근로계약상의 본연의 업무인 현장 직원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 업무를 전임하여 오다가 노동조합의 부수업무인 노동조합 사무실 청소를 수행하던중 그 업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된 것이라 할 것이며, 산재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 본래의 담당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사용자의 업무상 의사에 따른 구체적, 개별적 지휘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서 수행하였던 제반 업무는 산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될 뿐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

○○중공업(주) 근로자가 창원시 축구협회 주관 축구경기참가 경기중 피재되어 요양을 신청한 경우

(93-796호 93. 7. 26. 취소)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강 ○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원 처 분 청 :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 재 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중공업 주식회사

주 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3. 5. 11.자 “강○ ○”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은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3. 5. 11.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중공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 4. 4. 창원시 축구협회 주관 축구

경기에 참가 경기중 피재되어 상병명 “내측부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및 혈관절증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은 참가한 경기가 창원시 개청 제13주년과 제12회 시민의 날 기념, 창원 종합운동장 준공기념, 그리고 축구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목적이고, 출전 경기도 창원시 축구협회로부터 사업장의 출전 요청을 받아 한중 축구회 회장명의로 출전케 되었으며, 경기 장소도 창원전문대학 운동장인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사업주가 출전경비를 일부 부담하고 경기 당일인 1993. 4. 4.(일)을 특근으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결정에 불복하면서 사업체 선양과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 지시로 사업체를 대표하여 출전한 대회로 사업주의 연습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경기 당일에 대한 특근의 인정과 경비 지원하에 참가한 경기중 피재되었기에 업무상 재해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3. 6.25. 강○○)
2. 답변서(1993. 7. 8. 원처분청)
3.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3. 6. 11)
4. 최초 요양신청서 사본(1993. 4. 27. 강○○)
5. 재해조사 북명서 사본(1993. 5. 11. 원처분청)
6. 제14회 시장기쟁탈 기관 기업체 대항 축구대회 개최 통지 사본(1993. 2. 22. 창원시 축구협회장)
7. 참가비 영수증 사본(1993. 3. 20. ○○중공업(주))
8. 행사지원품의 사본(1993. 3. 17. ○○중공업(주)노무부)
9. 창원시장기쟁탈 축구대회 결산보고서 사본(1993. ○○중공업(주))
10. 축구대회 참가선수 명단 통보(1993. 3. 21. ○○중공업(주)노무부)
11. 창원시 시장기쟁탈 기업체 축구대회 출전 협조 요청 사본(1993. 3. 한중축구회)
12.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중공업(주)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3. 4. 4. 창원시 축구협회 주관 축구경기에 참가 경기도중 피재되어 상병명 “내측부 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및 혈관질환, 좌측 슬관절”에 대하여 요양신청하자 원처분청은 참가한 경기가 창원시 개최 제13주년과 제12회 시민의 날 기념, 창원종합운동장 준공기념 그리고 축구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목적이고, 출전 경기도 창원시 축구협회로부터 사업장의 출전 요청을 받아 한중축구회 회장명의로 출전케 되었으며, 경기 장소도 창원전문대학 운동장인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사업주가 출전경비를 일부 부담하고 경기 당일인 1993. 4. 4(일)을 특근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하였던바 이에 청구인은 동 대회가 사

업장 선양과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 지시로 사업체를 대표하여 출전한 대회로 사업주의 연습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경기 당일에 대한 특근의 인정과 경비 지원하에 참가한 경기중 피재되었기에 업무상 재해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건을 면밀히 살피건대 동 대회는 매년 연례적으로 창원시 체육회가 주최, 창원시 축구협회가 주관하였던 것으로 동 대회 참가요청은 ○○중공업(주)에게 하였으며, 이에 사업주는 사업장내 축구회 회원을 중심으로 청구인의 19명의 선수를 선발하여 출전케 하였던 것으로 동 대회참가를 전후한 연습 및 대회에 따른 연습시간 및 일요일 시합 일정에 대하여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인정하였으며 시합 당일 편도 1회 사업주 소유 차량을 제공한 바 있음, 이와 함께 동 대회 참가비 7만원, 식사 및 운동복 비용 등으로 100만원을 지급하였던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판단건대 청구인의 재해는 축구대회 목적이 창원시 개청 기념, 시민의 날 기념, 종합운동장 준공기념 및 축구인 저변확대를 위한 대회라 하더라도 동 대회에 참가케 된 것이 동 시합에 따른 참가 요청을 받은 사업주가 지역에서의 사업장 선양 및 노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사업체를 대표하여 출전키 위하여 소속 근로자를 선발하여 연습 및 출전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및 기타 행사비를 지급하여 출전케 하였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동 대회 참가 시점부터는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비록 휴일중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피재되었다 하더라도 시합중 사적행위 없이 사업장을 대표한 기업체간 시합에서 피재되었다면 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